

# 군 동원제도의 시대적 고찰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정재극\*

## 요 약

동원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에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 운영하는 국가의 권력 작용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동원태서의 완비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고 평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동원제도의 연구방향은 민·관·군의 통합된 계획과 집행에 의해 이루어져야 신속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이 되더라도 동원제도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 Army mobilization system for the direc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study period

Jung Jae Keak\*

## ABSTRACT

Mobilization is defined as a use of national authority to effectively control, manage and utilize all personnel and material resources of a nation in a national emergency situation. Therefore, the complete posture of mobilization many deter war and secure victory as well as serve as a driving force for national economy during peacetime

The future of military mobilization policies will need to be developed in relation to other government and administrative departments. Also mobilization of reserve forces can increase its swiftness and effectiveness by integrating the civilian, governmental and military departments. Additionally, the mobilization of military reserve forces policy after the unification in this Peninsula will need to be developed through active researches.

**Key words : Mobilization system, Mobilize troops, National total war, Mobilizing government agencies, War Plan**

## 1. 서 론

미래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가 총력전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여기에는 우수한 인력과 첨단화된 장비로 무장된 군사력만이 최종 승리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중에서 예비전력, 즉 동원능력은 현대전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역사는 평균 30년 마다 외국의 침략을 받아왔음을 기록하고 있다. 외침으로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외세를 몰아내기 위해 국민들은 단결하였고 국방력이 강화되는 계기도 되었다. 이를 현재에 이르러 동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동원제도는 1500여 년 전인 삼국시대부터 국가방위사상에 기초한 제도로 발전시켜 왔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는 국방의 주력이 상비군이 아닌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이는 평시에는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 동원되는 병농일치의 군사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고구려는 지방의 기본 행정기관인 성에 일정규모의 지방군을 주둔시키고 유사시 평민을 동원하여 하였던 '경당'이 있었고 신라는 청소년 조직으로 무장한 '화랑도'가 있었다. 고려는 중앙군의 보충을 위해 지방의 농민군을 변상군으로 동원하였고 지방호족을 지휘관으로 하는 '광군' 제도를 전국적으로 조직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상비군과 농민, 의병이 조직되었지만 동원체제의 부실로 '민보론'이 대두 되었다. 이는 평시에 훈련을 하여 전시나 비상시에 사전에 준비된 보로 들어가 총력전을 수행하였던 제도로 지금의 향토방위제도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대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비군의 전력도 중요하지만 예비전력의 정예화도 무척중요하다. 이는 전쟁 지속능력뿐만 아니라 속도전으로 속전속결로 결판나는 현대전을 특성을 감안할 때 평시 잘 정비된 동원전력이야 말로 유사시 절대적인 전력임을 알아야 한다.

본 연구는 시대별 동원제도에 대해 문헌적 고찰을 통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교훈을 도출하여 현재 군복무 단축으로 군 전력이 약화되는 공백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 문헌적 조사를 통한 이론적 배경과 각종 군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동원업무를 담당하

면서 고민하였던 부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2. 동원제도의 시대적 고찰

### 2.1. 선행연구 검토

동원제도는 우리나라에서 향토예비군이 설치된 이후 많은 연구가 진행 되었다.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자', '내 고향 내 직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아래 많은 군 관계자들이 동원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동원제도에 대해 가장 질실하게 느끼는 군에서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건양대학교에서는 예비전력연구소를 통하여 동원제도의 발전과 군 예비전력 향상을 위해 연구하고 있다.

문헌을 통한 선행연구로 조규호(2012)는 한국의 병력동원제도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장지연(2012)은 제도 개선과 전력구조 및 구성운영방법의 다양화와 상비와 예비전력을 국지도발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하였다. 김진성(2012)은 동원령선포 요건완화와 사전동원에 대한 근거법률의 제정과 정비를 요구하였다. 박지혁(2010)은 국가동원조직의 보강과 긴급단계 혼란 해소를 위한 사전 및 부분동원법 제정을 제시하였다. 박종삼(2010)은 군구조 개편 및 행정관서의 변화와 연계성을 유지하고 통일이후의 동원에 이르기까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방영목(2010)은 물자동원과 병력동원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급변하는 안보환경을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군 동원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행작전위주로 계획된 현재의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전시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시되고 있다. 따라서 전·평시 계획의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동원전력이 극대화되기를 기대한다.

### 2.2 삼국시대 동원제도

삼국시대의 전쟁은 보급의 한계와 기후의 제약으로 기간이나 규모면에서의 제한을 극복하지 못하고 단기

전의 형태로 치러지는 것이 통례였다. 물론 해를 넘기어 전투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것 역시 보급과 기후의 제한사항을 극복하지 못한 데서 나온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가 거의 전부였다. 통상 고구려를 침공했던 수·당나라는 추수가 끝난 겨울철에 군량을 비축하고 이른 봄에 기동을 개시하여 하계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었다. 당시의 보급체계와 기동수단으로 보아 동계작전의 수행은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추위와 굶주림을 극복할 수 있는 보급능력도 없었고 보급체계도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전쟁은 규모와 시기의 제약 속에 치러졌다. 전투수행 방식도 대규모 기동전보다는 공성과 수성을 위한 성과 성 주변 지역에서의 전투가 주를 이루었다. 수나 당나라가 수륙병진으로 진격한 후에 결국은 청야입보(淸野立保 : 적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농작물이나 건물 등 지상에 있는 것을 말끔히 정리하고 성안에 들어와 보호를 받음) 개념의 거점방어를 택하는 고구려의 성을 합동 공격한다는 전투수행 방식을 택했다. 이는 보병위주로 편성된 중국 군대는 속도전이나 기동전을 수행할 역량 자체를 보유하지 못하여 고구려가 이러한 수·당 군대의 약점을 극대화하는 거점방어 형태의 초토전술을 구사했기 때문이다.

고구려가 펼친 성곽 중심의 방어 체제는 당시 보병위주로 편성된 원정군 인 수나 당나라의 군대가 극복하기 힘든 개념의 체제였으며 고구려는 성곽에 다음과 같이 상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성곽에는 활, 갑옷 등 무기류와 충차(衝車), 비루(飛樓), 운계(雲梯) 등과 같은 공성(攻城) 및 수성(守城) 장비들이 대량으로 확보되었으며 그에 따라 군량도 수만 내지 수십만 석이 비축되어 있었다. 따라서 후방 지원이 단절된 고립상황에서도 일정기간 동안 전투임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고구려는 거대한 군사병영이나 다름이 없는 2백여 개의 성곽에 항시 20만 내지 30만 명 선의 병력을 유지하면서 동북아시아 대륙의 패자(覇者)로서 군림할 수 있었다.

중국 군대는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항상 위무사(慰撫使)라는 직책을 두어 다른 방책에 의해서도 고구려군의 방어능력의 분쇄를 모색하도록 조치하였다.

공성작전의 어려움을 전투 이외의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상대측 내부의 분열과 혼란을 유도하려는 다양한 방책을 모색하여 했다.

당 고종이 수차례에 걸친 소규모의 침공과 대규모의 침공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를 굴복시키지 못할 때, 고구려의 내분과 이에 따른 지도부의 분열을 기다리는 전략을 택한 것은 원정과 공성작전의 어려움을 고구려의 약점으로 보충하려는 책략이라고 보여 진다[1]. 이와 같이 삼국시대에 행해진 전쟁에서의 전투는 기동전 보다는 공성전으로 특징지어져 이의 이점을 이용하거나 이의 단점을 극복하려는 정략과 전략이 교전 당사국들에 의해서 부단히 모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쟁의 수행도 인원이나 물자를 동원함에 있어 근원적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여, 신라에 대한 끊임없는 침공으로 자국의 국력을 소진시킨 백제와 끊임없는 중국 세력의 침공을 다른 방책으로 막지 못한 고구려가 전쟁 후 멸망하는 원인이 되었다. 단기전의 계속이 결국 장기적인 국력의 소모를 재촉하였고, 이로 인한 궁핍과 내부의 분열이 결국 삼국시대의 전쟁을 마감하는 요인이 되었다.

### 2.3 고려시대 동원제도

고려시대에 치러진 전쟁의 대부분은 외부의 침공과 고려의 방어 전쟁이었다. 고려시대의 군사제도를 살펴 보면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왕조 성립기부터 전기의 군사제도가 결정적으로 붕괴한 원나라 간섭기 등 시대상황에 따른 많은 변화의 요소는 있었지만 군의 구성은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구분되고 중앙군에는 2군 6위로, 지방군에는 주현군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전체 군사력에서 지방군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컸다.

동원의 시행은 먼저 도성의 경비나 변방지역 경계와 같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원의 경우 그 구체적인 과정이나 절차가 밝혀져 있지 않다. 고려가 모범으로 삼은 당나라 부병제(府兵制)에서 번상병(番上兵)의 동원은 절충부 장관인 절충부사와 주자사(州刺史)가 협력하여 업무를 분담하였다[2].

지방 절충부에서 위사장(衛士帳)이라 불리는 군적

(軍籍)을 작성하여 매년 병부에 보고하면 중앙에서는 이 군적으로 현재의 병마수를 파악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동원계획을 세웠다. 이 위사장은 주현의 호적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군적이었다. 변상병 동원 시 절충부의 관원은 군적에 기재된 군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불공평이 없도록 하였다. 즉 부자형제를 동시에 같이 동원하거나 부모, 조부모가 노병하고 호 내의 여정(餘丁)이 없는 자를 차점(差占)하는 것은 피하였다.

고려 역시 매년 주현에서 호부에 올린 호적을 바탕으로 군적을 작성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변상병을 동원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려에서는 지방에 절충부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적 작성 등 군사 행정 실무와 마찬가지로 군목도 장관인 지방관의 지휘하에 속관을 비롯한 주현의 향직인 사병(司兵)소속의 병정(兵正), 부병정(副兵正), 병사(兵史)등이 변상병의 동원 업무를 담당하였다.

변상병의 선발은 군적을 토대로 동원할 군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미리 정해진 순차에 따라 동원하였다. 고려에서는 매 3년에 1번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문헌적 근거는 미약한 실정이다.

다음으로 전쟁이 발발하거나 반란이 일어나 대규모 병력이 필요한 경우 어떤 방식으로 군사의 동원이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이나 절차를 살펴보면 ① 몽고의 침략에 대비하고자 채추(宰樞 :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을 합쳐서 양부 또는 채추라고 불렀으며, 이 양부의 고관이 함께 모여 국가의 중대사를 회의로 결정짓는 것을 채추회의라고 하였다)에서 남방 주현의 정용 보승군을 동원하여 북방 요새지에 축성하자는 회의를 하였다. ② 서해 도에서 일어난 도적을 토벌하기 위해 호부원외랑(戶部員外郎)을 보내 주현병(州縣兵)을 동원하게 하였다. ③ 조위총 난 때 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해 여러 장군에게 명령하여 서남계 주현졸(州縣卒)과 승도를 동원하고 군사를 나누어 지휘하게 하였다. ④ 우부승선을 보내어 남도병마로 거란 병을 격퇴하게 하였다. ⑤ 충주에서 관노들이 난을 일으키자 채추에서 발병, 즉 병력 동원을 논의 하였다. 위의 사례들을 통해 군사의 동원, 즉 발병은 채추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였고 이때 동원할 병력의 규모, 동원지역 등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채추회의에서

발병(發兵)이 결정되면 최종적으로 통수권자인 왕의 발병을 명령하였다. 그리고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경우 군사 발병의 명령을 받은 자에게 동원한 군대의 지휘권도 함께 부여하였다.

## 2.4 조선시대 동원제도

조선의 방위개념은 한반도에서 존재해 온 국가들이 채택해 온 청야입보(淸野立保)였다. 이 개념은 외부의 침공이 있을 경우에 침공군이 사용할 수 있는 식량과 도구 등을 모두 치우고 지역 주민과 병사들은 성곽에 의해서 보호된 요새로 입성하여 이를 지킴으로써 원정군의 보급상 약점을 극대화하여 스스로 물러나게 만든다는 소극적 방어개념이었다.

병자호란 시에는 이러한 방위개념의 약점을 이용하여 청 태종은 요새를 우회하고 신속하게 남하하는 공격 전술을 택함으로써 조선의 방위개념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조선은 부실하고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방위 개념을 채택함으로써 항상 적의 침공 시 국토를 유린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조선전기 국방체제의 근간은 진관체제(鎭管體制)였다. 1457년(세조3년)에 확정된 진관체제는 행정조직 단위인 읍(邑)을 군사조직 단위인 진(鎭)으로 동시에 편성해 주진(主鎭)·거진(巨鎭)·제진(諸鎭)으로 나누고 행정관인 수령이 군사지휘관의 임무도 겸임하도록 한 제도이다.

제승방략(諸勝方略)체제도 훈련이 미흡한 농민군의 문체가 대두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임진왜란 중인 1594년(선조 27년)에 전황을 타개하기 위해 농민에게 총포사격술을 훈련시키면서 속오군이 편성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속오군은 몇 차례 정비를 거쳐 조선 후기 지방군의 중추로 자리 잡았다. 속오군은 일종의 전시동원으로 일반 양인은 물론 양반, 유생, 향리, 공사노비까지 포함했다. 전란이 끝나면 양반, 유생은 빠져나갔으나 천인은 그대로 남았다. 전란에 따른 인적손실로 인해 천인을 제외하고는 속오군 유지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전에는 포함되지 않던 천인이 군역에 들어간 것은 임진왜란 이후 군역 운영의 큰 변화였다.

속오군은 임진왜란 당시 비상전시체제로 만들어진 탓에 이들에 대한 대우를 그다지 고려하지 않았다. 향

촌에서 자전자수(自戰自守)한다는 원칙하에 편성되어 보인(保人)도 지정되지 않았고 별도의 보수도 책정되지 않았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신역(身役)을 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부가적으로 군역을 부과한 이중 역(役)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속오군의 처우는 창설 당시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왔다.

속오군의 처우는 효종 대에 다소 개선되었다. 북벌론을 표방하며 군비확충에 힘을 기울인 효종은 1654년(효종 3년) 3월에 ‘영장사목’을 반포(頒布)한 후 그해 9월에 영남지방의 속오군에게 각각 보인 1명을 배정하도록 제도화 했다. 또 삼남지방에 한해 군사 훈련에 참가한 속오군에게 호역(戶役)이나 신역을 면제해 이중 역에 따르는 부담을 덜어주었다. 효종이 속오군에 대한 처우를 삼남지방에 국한시킨 이유는 조선에 대해 군비간섭을 가하는 청나라를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조선후기에 나타난 민보(民堡)란 민생(民生)을 보장하기 위해서 향촌의 소규모 성곽이나 보(堡)를 근거로 민(民)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방위전략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전술인 청야입보를 활용한 방어체제이다. 즉 민간주도형 향촌자위체제로 요해지(要害地)에 보를 설치해 이를 작전 거점지역으로 삼아 전술 효과를 최대로 증대시키는 것이다. 평시에 미리 주민을 편성, 조직해 훈련시키며 전시나 비상시에 사전 훈련된 전 주민이 보로 들어가 총력전을 펼치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 관군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보위하고 적침에 대비하자는 방안이었다. 그리고 향촌 단위의 군사력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전력화하면 궁극적으로 국가의 국방력이 강력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었다. 요컨대 유비무환의 자주 국방태세 속에서 전 국민을 군사력화 하려는 의도였다.

민보의 조직은 정군(丁軍)과 산군(散軍)으로 구분되고 민보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정군은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남자로 편성하도록 하였다. 민보는 또한 관군의 도움 없이 민간의 전력으로 외적을 스스로 방어하는 시스템이다. 전술적으로 견벽청야(堅壁淸野 : 적의 양식 조달을 차단하는 전술) 및 선수후전(先守後戰)의 방식으로 유사시 백성과 양식, 물자 등을 먼저 보고 옮기고 적과 지구전을 벌여 물리

친다는 거점방어의 개념이다. 이런 측면에서 민보는 민간인을 모아 장기전을 펼치고 피난장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식량 확보는 적과의 승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 민보론에 의거 고종의 명을 받아 전국에 내려진 민보령(民堡令)은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외적의 침공이 있을 때마다 조선 각지에서는 의병이 조직되어 봉기하였으며 이들은 침공군의 후방을 위협하거나 점령지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그러나 청나라와 러시아를 패배시킨 일본의 황포에 대항하여 여기저기서 의병이 일어나 일본의 한국 합병을 저지하려 하였으나 결과는 일본의 의도대로 진행되어 정착되고 말았다.

이러한 일제에 항거하여 3.1운동도 일어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해외에 망명 정부가 결성되고 비교적 조직적인 독립운동도 전개되었으나 이러한 노력의 결집과 조직화를 위한 통솔력과 지도력이 부족하여 한국민의 민족적 역량을 집중시키지는 못했다. 따라서 산발적인 봉기와 항거가 침공군의 무력 사용이나 침략국의 결집된 강요를 무효화시키지 못하고 말았다.

조선이 유지해온 방위체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이를 더욱 취약하게 만든 것은 동원체제의 부실이었다. 조선은 군역(軍役)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식화하여 군비(軍費)를 충당하고 있었다. 방군수포(放軍收布)라는 이 제도는 누구나 일정한 양의 포를 납부하면 군역을 면제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거두어들인 포는 수사, 병사들의 생활비용과 일상경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국가재정 형편상 어쩔 수 없는 조치이기는 하였으나 여기에서 발생된 부작용은 조선의 방위체제를 거의 무력하게 만들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였을 때 수도에서 300여 명의 병력밖에 소집할 수 없었던 현실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그리하여 외부의 침공이 있을 때마다 조선의 국왕은 의병의 봉기와 근왕을 호소하여 많은 전직 관료와 유생, 그리고 일반인의 호응을 불러일으키긴 하였으나 남한산성에 갇힌 조선의 국왕을 구할 정도의 강한 근왕병은 아니었다. 조선은 이와 같이 평시의 상비병력이 부족하거나, 있어도 부실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 침공을 격퇴시키고 반격작전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하고 부적합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었다.[3]

총체적으로 조선이 치른 전쟁에서 조선은 왕조와 국가의 운명을 타국에 맡긴 채 개별적인 항거와 울분을 토로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행위를 취할 수 없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은 국가의 방위와 국체의 보존은 단순한 항거와 울분만으로 보장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왜군의 침공을 예견하고 10만 명의 병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율곡 이이의 예지와 탁견이 필요하였으며, 평시에 일본군의 침공에 대비하여 거북선을 건조하고 훈련을 강화하며 자신의 전략적 식견과 지혜를 가다듬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이순신의 의지와 대비가 필요했다.

당쟁과 당파적인 이해에만 집착했던 조선의 지도층은 이를 알 턱이 없었고 이러한 국가적 노력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 지도층이 이끌어 가던 조선은 국가적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대로 갖추 수가 없었다. 조선의 전쟁사와 흥망사는 국가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식견과 조치가 필요하고 어떠한 사고와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 2.5 6.25 전쟁 시 남한 동원제도

6.25 전쟁 당시 남한은 정부수립 과도기에 있어 동원을 위한 법적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국민들도 각 정파별 혼란의 와중에 있었다. 또한 미국의 내정간섭과 미약한 산업기반 등으로 독자적 방위체제와 동원능력을 갖추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전쟁을 치르면서 소집과 징병의 시행착오를 반복했지만 혼란을 극복해냈고 미국의 지원 하에 장비와 물자를 보충하면서 군을 확장하고 국민개병의 동원 체제를 발전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부수립 직후부터 6.25전쟁 발발 직전까지 정부는 군을 조직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개병제 정신에 입각하여 1949년 8월 9일 '병역법'을 제정하고 역종을 구분하여 징집과 소집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전시, 사변 등에 대비한 동원소집을 법제화 하였다. 그리하여 1949년 9월 1일 국방부에서는 육군본부에 '병무국', 각 지방에는 '병사구 사령부'를 설치하여 병무행정과 병력동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도

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였지만 미국에 의한 '국군정원제한'과 국내 정치 불안정에 부딪혀 1949년 3월 징병제도는 보류되었다. 그리하여 지원병제도는 변경되어 육군본부 '병무국'과 각 '지방 병사구 사령부'는 해체되었다. 정부는 동원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1948년 11월 20여만 명의 '호국군'에 이어 이를 대신해 1949년 11월 20여만 명의 '청년방위대', 47여만 명의 '학도호국단'을 창설하였으나 국내정치의 불안정, 상급제대에서의 체계적인 계획준비 미흡, 장비 및 훈련여건의 미비 등으로 조직적인 발전이 되지 않은 채로 해체되거나 초기단계에서 6.25전쟁을 맞게 되어 동원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발전되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전시 징발제도나 국가 동원계획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도서울이 3일 만에 점령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전선부대로 가야할 보급품과 차량, 수많은 장병과 서울시민, 그리고 군사관계 문서가 서울에 유기되어 전쟁초기에 혼란이 극도로 가중되었다.

정부는 1950년 7월 전라 남·북도를 제외한 '전국 비상계엄령' 선포와 '비상항도방위령'을 공포하고 이어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징발에 관한 특별 조치령'과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규칙'을 공포하여 전지자원동원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제 2국민병'을 소집하였다. 하지만 당시 응소인원이 적어서 가두모집이나 가택수색을 통한 강제 징집과 소집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임기응변식 동원에 의존했다[4]. 이렇듯 전쟁 초기 인력동원 및 병력 확보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남한 내 장정들을 효과적으로 소개(疏開)하거나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전쟁 초기 막대한 병력손실 앞에서 정부와 군은 교육지책으로 가두모집과 가택수색에 의한 징집, 그리고 소년지원병, 학도의용군, 대한청년단원, 청년방위대원 등을 동원하여 전선에 투입하는 비정상적인 동원방법에 의존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국군의 전선 수요에 적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그리고 당시 부대제편성을 위해 서해안 전투사령부를 신설하고 전남·북 및 경남·북 편성 관구사령부 예하에 신원사단의 창설 노력을 하였지만 장병 낙오병 수습에 그치고 말았고 정부차원의 장정소집과 징집을 이루어지지 않아

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해체되거나 다른 기구에 흡수되고 말았다. 그러나 7월 중순부터 대구 제1보충훈련소에 이어서 전국 7개 훈련소를 설치하여 비록 훈련기간을 7일에서 15일로 짧았지만 신병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1952년경부터 창설된 사단들에게 징·소집과 병행해서 야전군훈련소에서 정상적인 훈련을 시키고 투입하는 체제를 마련하는데 밑바탕이 되었다.

1950년 8월 낙동강 방어선에서 전열이 정리되자 국군은 전시 동원 체제를 완비하기 위해 당시 잔존하던 대한 청년단과 청년방위대, 유희전력으로 남아 있는 제2국민병을 한꺼번에 묶어서 동원하는 국민방위군 설치법을 1950년 12월 제정하여 약 68만여 명에 달하는 제2국민병 장정을 소집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것은 국민방위군 사령관이나 부사령관 등 핵심 간부들을 능력이 있고 청렴한 군인정신이 투철한 현역 장성 중에서 엄선했어야 했는데 군경험이 전혀 없는 민간인 위주의 대한청년단 및 청년방위대의 기존 간부조직과 지휘관을 선발하여 보직함으로써 엄정한 기강확립과 지휘체계 확립에 실패하였고 군 내부적으로도 대규모 병력을 수용하고 훈련하기 위한 준비가 미흡하였으며 상급지휘 감독기관인 국민방위국의 설치가 지연되어 지도 및 감독 역할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부패와 부실로 많은 사상자만 양산한 채 국민방위군 사건이란 오점을 남기고 해체되어 병력동원 제도는 무산되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1951년 5월 병역법 개정을 통해 병력소집 공고제를 시행하고 국방부에 병무국을 창설하여 지구 병사구사령부를 국방부에 예하기관으로 변경시키고 제2국민병 소집과 징집을 병행하여 징집제도와 병력동원제도를 동시에 정착시켰으며 1955년 8월 부터는 제2국민병 소집을 종료하고 지원과 징집에 의해서만 병력을 보충하였다.

국민방위군은 국군과 유엔군 철수 시 장정들을 집단으로 남하시켜 수용·보호함으로써 68만 명에 달하는 장정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소개와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국민방위군은 중공군의 참전 그리고 미군의 철수논의 등 국가가 가장 위급한 시기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방제도와 조직발전의 기틀을 놓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방위군의 창설은 한국전쟁에서 국민총력전 체

제로 돌입을 의미했다. 만약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각 행정부서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국민방위군을 당시 정규군이 직접 책임을 지고 운영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오늘날의 향토예비군 제도로 바로 연결되었을 것이다.

1951년 4월에 제2국민병 소집과 더불어 육군을 20개 사단으로 확장하기 위한 국군 증강계획을 수립하고 미국정부와 협의를 하였던 노력은 비록 당시에 곧바로 관철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미측이 요구한 한 국군 장기 확장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추진됨으로써 제2국민병 소집토대가 합리적으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자 및 시설동원은 당시 미약한 산업기반시설이나 한강 인도교 조기 폭파로 많은 차량과 장비를 손실하게 되어 어려움이 가중되었지만 비상계엄선포와 징발에 관한 특별 조치령을 공포하고 육군본부에 민사부를 설치하여 전시 징발을 위한 긴급조치를 신속히 취함으로써 제한되나마 민간차량 및 선박, 부동산 등을 징발하여 사용토록 보장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같은 전시 사용자원 현황과 관리가 부재한 시기였으므로 현지 징발이 주종을 이루었고 생산능력과 기술수준이 낮았으므로 전쟁 물자 및 장비는 대부분 미군의 지원에 의존하고 급식과 일부 피복, 민수용 통신 부속품, 전기, 공병 자재만 국내 생산품으로 조달하였다.

## 2.6 6.25 전쟁 시 북한 동원제도

북한 동원의 특징은 교훈은 우선 주도면밀하게 준비된 소위 민족해방전쟁 계획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은 전쟁계획 수립과정에서 전시 총동원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과 지침을 사전에 마련하고 세부 행동대원까지 조직화한 다음 전쟁발발과 동시에 잘 준비된 계획에 따라 총동원 계획을 시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총동원체제를 지도할 최고 의사결정 및 전쟁지도 기구로서 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군사위원회가 정부 내각의 각부, 중앙기관 및 지방정부기관을 장악하게 함으로써 전시총동원 체제를 완비하였으며, 북한과 남한지역을 구분하여 동시적 또는 단계별 동원 계획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적용하였다.

북한의 전시동원 논리는 미 제국주의를 몰아내기

위한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으로 선언하고, 선전수단으로 라디오, 신문 등 언론을 활용한 김일성의 연설 선전과 동원 및 참전고무 군중집회·궐기대회·시가행진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영향력 있는 대표 인사를 활용한 주민과 대중에 대한 선전활동, 벽보·포스터·플랜카드·빠라·전단 등 홍보성 유인물, 연극·영화상영·노래보급 등 문화예술행사, 그리고 호별방문·개인설득 등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6월 27일 전시상태 선포지역 권한규정 8개항, 7월 1일 18-36세 동원령 선포 등 일련의 조치를 일정별로 추진하였고 인민군초모사업 조직과 후방강화지침을 하달하여 물자동원과 노력동원도 계획적으로 시행하였다. 또한 서울을 점령하자 남한의 동원을 위해 7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정령을 공포하여 전투인력 동원을 위한 의용군 초모사업과 군중집회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인력동원(의용군 및 노무자)을 위해 1개 군단에 2-3명의 정치공작대를 파견하여 선전요원으로 활용하였으며, 북한지역과 동일하게 도시와 농촌지역을 구분하여 인민위원회·민청·여맹·학련·전평 등을 조직하여 지역·직장·계층별 기간조직을 적극적으로 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명서·서명운동전개·진향 좌익 활동가를 활용한 국민보도연맹 조직과 할당제식 책임 동원 체제 마련과 단위 작업반 조직·복구대 등을 계획하여 노력동원으로 후방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북한은 남한지역에서 활동하는 무장부대인 빨치산 부대의 활동에 주목하여 주민들에 대한 선전선동을 강화하였다.

북한은 물자동원을 위해서도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주민 저금작업을 전개하여 유희자금을 동원하였고 군수물자 수송, 기동 공작부를 조직 운용하여 전선군수물자 보급을 보장시켰고 귀금속에서부터 생필품, 주·부식류에 이르기까지 강제동원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북한의 동원은 선전과는 달리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추진한 위로부터의 하향식 동원이었다. 그래서 민중의 이해관계는 무시되거나 파괴되었고 결국 북한의 전쟁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특히 노력동원과 의용군 모집책임자의 일관성과 조직성이 미흡하였으며 미국의 참전으로 전쟁패배에 대한 주민의 두려움을 불식시키기 못한 가운데 전쟁 장기

화에 따른 지나친 동원이 주민의 생존기반을 위협하게 되어 전쟁에 대한 혐오심이 증대하였다.

또한 전쟁실패라는 민중의 동요와 유언비어가 확산되어 동원성고가 미약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남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선전을 불신하고 전시동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거나 이탈, 도주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북한은 강력한 사회통제를 통하여 이를 제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강도 높은 통제와 규제는 오히려 민중의 이탈을 가속화시킬 뿐이었고 결국 북한은 남한 점령지역에서 민중의 자발적인 지지를 끌어내는데 실패하여 주민들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없었고 전쟁에서도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

### 3. 현행 동원제도 실태

#### 3.1 총괄기관

법령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각 부처에 동원기본계획의 작성 및 지침의 시달, 동원자원조사 및 통제, 물자비축에 관한 조정과 감독, 주무부처에 대한 집행계획을 승인하는 등의 비상대비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5]. 비상기획위원회의 기능은 비상대비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가동원업무의 총괄, 자원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비상대비 교육 및 훈련, 비상대비업무의 조사연구, 기타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총괄·조정함으로써 국가동원의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국무총리를 보좌한다. 특히 총무계획을 수립하고, 동원을 집행하는 기관인 중앙부·처나 광역시·도, 그리고 중점관리지정업체의 비상대비업무 전반을 전담하기 위해 군 출신 전문가를 비상계획관으로 추천하고 있다[6].

그러나 총괄기구와 집행기구의 권한은 미약한 실정이다. 총괄기구인 재난안전실은 국무총리를 자문, 보좌하는 기구로 분야별 다원화 되어 있는 중앙행정부서를 조정·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제한되며, 지방자치단체는 병무조직이 폐지된 이후 민방위업무와 재난관리업무 위주로 수행되고 있어 유사시 동원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3.2 동원행정기관과 임무



동원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은 군 작전에 소요되는 자원에 대하여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동원하며, 국가동원에 관한 임무를 협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구·군 및 읍·면·동의 행정기관장, 군부대의 대표자 외에 동원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 검찰 및 경찰관계공무원, 동원업무 관련 단체의 대표 등으로 동원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시 효율적인 동원업무를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표 1> 기관의 임무

동원기관(장)	임무	관련기관(장)
대통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계획 승인, 국가동원령 선포 및 해제</li> </ul>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계획지침 작성</li> <li>-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주무부장관에게 하달</li> <li>기본계획지침 작성, 하달 및 통고</li> <li>-주무부장관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li> <li>-국무회의의 심의</li> <li>-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주무부장관에게 하달</li> <li>-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li> <li>각 부처 집행계획 승인</li> <li>동원준비에 관한 총괄, 조정, 확인</li> <li>동원물자 비축에 관한 통제, 조정, 확인</li> <li>동원자원에 관한 조사 등 통제, 조정</li> <li>동원계획 집행에 관한 총괄, 조정, 확인</li> <li>기타 동원행정에 관한 총괄, 조정,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통령</li> <li>주무부장관</li> </ul>
행정부 장관(주무부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계획안 작성 제출</li> <li>집행계획 작성, 하달 및 통보</li> <li>-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소관업무 집행계획 확정</li> <li>-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지방행정관서의 장, 관계 공공단체 및 중점관리업체의 장에게 집행계획 통보 또는 하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li> </ul>
행정부 장관(주무부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행계획 승인</li> <li>동원물자, 중점관리업체 지정</li> <li>직접통제 중점관리업체 임무고지 및 실시계획 승인</li> <li>동원물자 비축(자재)</li> <li>지정된 물자의 소유주 또는 중점관리업체의 장에 대한 물자비축, 시설개발 명령</li> <li>동원명령 하달 및 직접통제 업체에 대한 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특별시</li> <li>광역시</li> <li>도지사</li> <li>특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 영장 발부</li> <li>동원대상 자원의 실태 조사</li> <li>동원에 필요한 자원요소 요청</li> <li>기타 국무총리의 명령 이행</li> </ul>	지방행정관서장
서울특별시,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지방행정관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행계획 작성, 하달</li> <li>-주무부장관의 집행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li> <li>-구, 시장, 군수 또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하달</li> <li>위임된 중점관리업체 지정</li> <li>통제 중점관리업체에 임무 고지</li> <li>구, 시, 군의 실시계획과 업체의 실시계획 승인</li> <li>자원조사 실시 및 결과 보고</li> <li>동원영장(또는 소집통지서) 발부</li> <li>긴급동원요청 시 긴급동원영장(또는 소집통지서) 발부 및 주무부장관에게 긴급동원 운영 보고</li> <li>기타 주무부장관의 명령 이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무부장관</li> <li>구, 시, 군의 장</li> </ul>
구청장, 시장, 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시계획 작성, 하달</li> <li>-도지사 등의 시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업무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도지사 등의 승인을 얻어 확정</li> <li>-인력동원 실시계획을 읍,면,동장에게 하달</li> <li>물자 및 업체 동원영장 교부</li> <li>물자 및 업체의 동원집행</li> <li>자원조사</li> <li>비축물자 관리</li> <li>기타 도지사 등의 명령 이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 도지사</li> <li>읍, 면, 동의 장</li> </ul>
중점관리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무고지에 의한 실시계획 작성</li> <li>실시계획 집행에 필요한 지원요서 요청</li> <li>임무고지 수행에 따른 관련업체 및 기관과 협조</li> <li>동원영장에 의한 임무수행 준비</li> <li>동원보상금 지급청구서 제출 및 보상금 수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원지정행정기관</li> </ul>

출처 : 육군본부, 동원업무, 3-7 ~ 3-9, 2002.

### 3.3 동원관계 법령

동원제도를 실체화시키고 그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 동원관계법령이라 할 수 있다. 동원관계 법령은 헌법에 기반을 두면서 그 기능이 비상기획위원회,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의 전 부처와 연관되어 있어 매우 복잡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원관계 법령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전시대기법인 “국지전 등 위기극복을 위한 부

분동원에 관한 법률”을 평시법으로 조정함으로써 적의 국지도발 등 다양한 국가위기 상황에 적시적,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또는 통합방위법의 관련 법조항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사전동원제도의 법적 근거이다. 사전동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하는 실정에서 병역법의 병력동원훈련 소집과 향토예비군 설치법의 작전동원 방법을 준용하여 사전 대비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사전동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적으로 전·평시 이원화된 동원관련 법령을 평시법으로 통·폐합하여 일원화하는 것이다. 전시대기법인 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 국지전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부분동원에 관한 법률과 평시법인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을 통합하여야 할 것이다.[8]

### 3.4 동원제도 정비

동원제도는 전장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고 동원병력의 적극적인 참여로 유사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우리나라 전장환경의 특징중 하나는 짧은 전투중심으로 조기경보가 곤란하고 수도권이 장사정포 사정권 안에 있으며 국가동원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긴급단계에서 대부분의 자원을 국가동원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총동원령은 개전초기 집행에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중대한 교전상태” 하에서 총동원되도록 되어 있는 체계를 단계화한다면 긴급단계에서의 혼란과 국가동원시행을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총동원체계에 부가하여 작전동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전쟁위협상황에 따라 예비전력의 적시동원에 의한 효과적 대처로 국가동원의 유연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하므로 권역단위로 기능별, 영역별로 위협대비 소용에 따라 선별 동원하는 부분동원제도와 군사적 위협강도에 따라 시차적으로 우선 동원하는 사전동원제도를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이에 대한 효과는 전투중심이 짧은 환경을 어느 정

도 해소할 수 있으며 적의 기습공격에 대한 사전대비가 가능하고 적의 예상공격 방향에 예비전력을 사전 전개할 수 있어 적 공격저지와 아군의 공세적 여건 조성이 가능할 것이다.[9]

둘째, 동원병력의 보상 현실화문제이다. 장교와 부사관은 동원되면 현역과 같은 처우를 받기 때문에 가족 부양에는 문제가 없으나 병은 부양가족의 생계보장에 턱없이 부족한 월 13만여 원 지급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적어도 전시근로자 수준인 월 210만여 원(2011년 국방부 전시예산 기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부양가족에 대한 걱정을 덜고 전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10]

## 4. 결 론

우리의 역사는 침략에 대한 응전으로 대응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세계유일의 분단국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가라는 사실을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국민들이 무감각해지고 있다. 강릉 무장공비침투,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등을 볼 때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군은 남침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전쟁은 상대적인 것이다. 적이 가지고 있는 예비전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훈련되어 있다면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차분히 전쟁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를 알 수 없으면 과거에서 배우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가 930여 회의 크고 작은 전쟁을 치루면서 깨달은 역사적 사실은 관군뿐만 아니라 민간인 까지 자발적으로 의병을 조직하여 국토방위에 앞장섰다는 것이다. 이를 현대에 이르러 동원조직으로 승화시켜 발전적인 예비전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선행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첫째, 동원과 관련된 법률의 정비이다. 장차전의 양상을 고려한 동원령선포시기에 보완, 법적구속력있는 사전동원, 동원관련 법령의 평시법으로의 통폐합이 필요하다. 이는 전시에 즉응 예비전력의 공급을 통해 조기에 전쟁을 종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명시하여 조기에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물자의 신속한 전시 전환을 위해서는 보상체계가 법률로 정비된다면 침담

화된 기술로 무장된 우리 기술현실을 감안할 때 우수한 전쟁물자가 생산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둘째 동원제도의 보완 발전이다. 현행 전장환경에서 지형적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군사적 위협강도에 따라 시차적으로 우선동원하는 사전동원제도는 국방부장관의 건의,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하여 개진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고 동원의 효율적 시행을 보장받아야 한다. 현재 육군을 기준으로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21개월이다. 전투력 발휘를 할 만 하면 전역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 숙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에 임하게 되면 초기 전투에 많은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군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전쟁지속 능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현역복무를 마친 동원예비군들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 하여 예비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미래의 전쟁은 국가총력전으로 대응해야할 상황에서 국가기반시설과 인력을 동원하여 전쟁에 대비할 수 밖에 없다. 국가 존립의 결정은 과거처럼 몇 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빠르면 수주, 몇 개월 이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소 동원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얼마만큼 준비했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손자병법에 “천일양병(千日養兵) 일일용병(一日用兵)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군대를 한 때 써먹기 위해서 천일을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한다”는 뜻으로 일단 유사시를 대비하여 군인을 항상 길러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원전력이 바로 유사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자원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고난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결국 우리는 국민모두가 총력전으로 싸워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반복적인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동원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국방군사연구소, ‘한민족전쟁통사(1)’, pp. 173-174. 1994.

[2] 권영국, ‘사학연구 제 64호’, 2002, p.28.  
 [3] 군사편찬연구소, ‘조선 후기 국토방위 전략’, p.70. 2002.  
 [4] 비상기획위원회, ‘세계동원의 역사’, p.651, 2002.  
 [5] 조규호, “한국 병력동원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86, 2012.  
 [6] 장지연, “한국군 동원체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44-45, 2012.  
 [7] 박중삼, “동원즉시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한 한국의 병력동원제도에 관한 연구”,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87, 2010.  
 [8] 이필중, “전시 동원보장을 위한 한국의 동원제도 발전방안”, 국방연구 제45권 제2호, p.144, 2002.  
 [9] 박지혁, “국가동원 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50-51. 2010.  
 [10] 조규호, “한국 병력동원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06, 2012.

### [ 저 자 소 개 ]



**정 재 극 (Jae-Keak Jung)**

예)육군중령  
 2003년 육군대학졸업  
 1996년 건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석사)  
 2013년 한남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2011년~현재 수성대학교  
 군사학과 학과장

email : kuk2934@naver.com